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3.
정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1. 31. 강민국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 2025. 2. 3.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 제422회 국회(임시회)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 2. 19.)

-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 2. 20.)

상정 · 축조심사

-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 2. 24.)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 폐기)

- 제3차 전체회의(2025. 2. 24.)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강민국의원)

최근 알리·테무 등 중국발 이커머스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논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해외사업자의 형식적인 국내대리인 제도 운영으로 국내 이용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고 있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보완하고자 함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등을 대리하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인정보처리자의 국내대리인 관리·감독 의무에 대한 규정과 국내대리인의 지정 요건에 국내 소재 외에 그 형태나 운영방식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여러 국내대리인이 하나의 주소지를 두는 등 형식적으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운영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국내대리인이 대리하는 업무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현실성이 없으며, 국내대리인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국내대리인의 전화번호 등을 누락한 경우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국내대리인 관리·감독 의무를 부과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국내 법인을 설립·운영 중인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면서 국내대리인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지정 요건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국내대리인의 전화번호 등을 미공개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여 국내대리인 제도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함(안 제31조의2제1항·제2항 및 제75조제3항·제4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없음

4. 대체토론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강준현의원)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

6. 찬반토론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부대의견

없음